

서울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에 對한 檢討 - 回顧와 展望

법과대학 김철수

I. 韓國 法學教育改革의 歷史

韓國의 法學教育은 日帝下에서 正式 發展하였다. 普成專門學校나 大東法學校 등에서 法學教育이 行해졌으나 正式法科大學體制는 京城法學專門學校와 京城帝國大學設立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 이 制度는 3年制 大學課程이 原則이었고 法學專門教育制度로 運營되었다. 解放 後에 京城帝大는 京城大學校로 改編되었다. 1946년에는 京城帝大法學科와 京城法學專門學校가 統合되어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이 設立되었다. 그러나 法學教育은 美國의 影響을 받음이 없이 舊日本式의 法學教育이 行해졌다. 이러한 4年制 學部教育은 司法試驗合格을 擔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教室의 空洞化를 가져왔고 山寺에서 暗記工夫하는 것을 考試受驗의 正道로까지 認識하였다.¹⁾ 法大卒業 後 高等考試 사법과에 合格하는 比率은 적었고 年間 300名 가까운 卒業生 中 法曹로 나아가는 比率도 적었다. 또 法大의 法學教育은 辯護士나 判·檢事의 職務와 동떨어져 있어 考試合格 後에는 法院이나 檢察에서 徒弟教育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徒弟教育도 判·檢事·辯護士의 不足으로 옳게 될 수 없었다. 아세아財團을 비롯한 美國援助機關의 도움으로 韓

1) 상세한 것은 김철수, 『고시계』 2003년 1월호.

國法學教育의 全面的인 改編이 論議되었고²⁾ 그 結果 서울大 法大가 學部教育을 맡고 司法大學院이 法曹教育을 맡는 시스템이 構築되었다.

이것은 法學教育과 法曹教育을 連繫하여 一貫된 教育을 하여야 한다는 意見에 따른 것이고 5·16 後 法學教育은 그대로 두고 法曹教育을 改革하려는 論議가 있었다. 그 結果가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制度의 導入이었다.

1.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의 實驗

美國教育顧問團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이 法律學科와 行政學科를 둔 것을 이상히 생각하여 1959년에는 行政大學院을 獨立시켰다. 이것은 當時 流行이었던 行政學의 普及을 위한 것이었으며 高級公務員과 軍將校들의 再教育에 目的이 있었다. 當時 서울大學校 教務處長을 거쳐 서울法大學長이 된 劉基天 教授는 美國式인 Law School을 導入하여 法曹人을 養成하기로 趙鎮萬 大法院長과 合意하고 軍事政府와 妥協하여 서울大學校에 司法大學院을 設立하게 되었다.

1962年 2月 17日에 閣令 455號로 法曹養成機關인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이 發足할 根據가 마련되었고, 1962年 4月 2日 高等考試 司法科 第14回合格者 42名의 入學으로서 開校하게 되었다. 初代院長에는 當時 서울法大學長이었던 劉基天 博士가 兼任하였다. 1965年 8月에는 第2代 院長으로 金箕斗 法大學長이 司法大學院 院長專任으로 補職되었다. 1969年 3月에는 第3代 院長으로 徐燉珏 博士가 就任하였고 1970年 末에는 第4代 院長으로 李漢基 博士가 就任하였다. 나는 1967年부터 1970년까지 3年間 3代 院長을 모시고 教務, 學生課長을 擔當하였다.

1969年 當時의 大學院委員은 徐燉珏 院長, 金哲洙 教務學生課長, 朴觀淑 延大 教授, 梁俊模 서울第一辯護士會會長, 李鳳成 大檢次長檢事, 李漢基 서울法大學長, 全宇榮 法院行政處長, 車洛勳 高大教授, 韓恒鎭 辯護士였다. 學生들의 授業은 1年은 大學院에서 理論講義를 하였다. 必須科目은 16學點이며 選擇科目은 8學點이었다. 教科課程은 다음과 같았다.

2) 미국 법과대학의 소개는 김철수, 미국의 법학교육 (1)~(6), 『고시계』 130~136호 참조.

區 分	教 科 目 名	學 點
教·必	韓國經濟	1
"	心理·精神分析學	1
"	現代哲學思潮	1
"	教養特講	0
專·必	民事演習	5
"	刑事演習	4
"	公法演習	3
"	外國法研究(英·獨·佛法 중 2)	4
"	經濟法研究	1
專·選	強制執行法	1
"	不動產登記法	1
"	法醫學	1
"	稅法	1
"	工業所有權法	1
"	英美證據法	1
"	事實認定法	1
"	社會法研究	1
"	身分法研究	1
"	國際法研究	1
"	特 講 (1)	2
"	特 講 (2)	2

實務修習은 法院, 檢察, 辯護士會에 委託하여 行하였는데 實務修習의 學點은 다음과 같다.

1. 民事修習 5학점
2. 刑事修習 3학점
3. 檢察修習 3학점
4. 辯護士修習 1학점

趙鎮萬 大法院長이 停年退任하고 새 大法院長이 오게 되어 1971年 大法院 傘下에 司法研修院을 두기로 하여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은 司法研修院에 學生들을 引繼하였다. 이것이 李漢基 院長, 裴裁湜 敎務課長 때 일이다. 이들 國際法學者들은 繼續敎育機關으로서 司法大學院의 存置를 企圖하였으나 力不足이었다.

司法大學院制度는 10年間 運營되었다. 司法大學院이 廢校되고 大法院 傘下에 司法研修院을 두게 된 것은 當時 法曹人들이 美國式 Law School의 長點을 認識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當時의 大法官 등 法院行政家들은 司法大學院에서의 獨逸法이나 英美法講義에 反感을 나타내었고 法官의 外國出張조차 嚴禁하는 狀態였다. 더군다나 司法大學院에서 美國判例나 獨逸判例를 研究하여 在來式 日本判例를 批判하는 敎育 등을 싫어했다. 또 辯護士爲主의 實務講義와 法院修習이나 檢察修習이나 辯護士修習이 法曹實務界의 여건 不備와 非協助로 잘 되지 않았던 것도 重要한 理由였다. 法曹人들은 自己들이 直接 所謂 司法官試補를 敎育하겠다고 하여 日本式 司法研修所制度를 模倣하여 徒弟式敎育을 固守하려고 하였다. 司法大學院學生들의 自由분방한 氣風에 대해서도 다갈시하고 過去 케케묵은 判例를 묵수하고 權威主義的 司法制度를 維持하려고만 하여 司法大學院制度를 廢止하고 司法研修院制度로 바꾼 것이다.

물론 內部的으로도 問題는 있었다. 當時 司法大學院이 서울大學校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法科大學의 呼應을 얻지 못했던 것도 重要原因이었다. 當時 行政大學院이 서울大學校밖에 없었는데 現在 수많은 行政大學院이 생긴 것을 볼 때 學界가 좀 더 團結하여 司法大學院을 살렸다면 지금쯤 많은 司法大學院이 생겼을 것이고 法曹敎育도 40年 前進하였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學內問題로 專任敎授를 두지 않고 兼任敎授와 講師만으로 運營된 것도 問題였다. 當時 서울大學校의 財政은 貧弱하였기에 司法大學院에 敎授 T.O.를 줄 생각도 하지 않았고 院長과 現副院長에 해당하는 敎務課長, 學生課長도 兼職이었다. 學生들은 過去 같으면 司法官 試補로서 勤務하며 公務員俸給을 받았을텐데 俸給을 받지 못하여 不滿이었고, 強制的 寄宿舍生活이며 苦된 敎育課程에 適應하려고 하지 않았다. 政府는 司法大學院 學生에게는 試補手當을 주지 않았고 學校에서도 獎學金을 많이 줄 수 없어 厚生福祉費 支給도 極少하였기에 學生들의 不滿

도 一理가 있었다.

그러나 美國政府의 도움으로 많은 美國教授를 招聘하여 講義를 함으로써 學生들의 世界的 感覺을 일깨워준 것과 그것이 契機가 되어 많은 卒業生들이 美國 등 海外留學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歸國하여 法院, 檢察, 辯護士業界뿐만 아니라 官界, 學界에까지 進出하여 先進的·合理的 紛爭解決方式을 導入할 수 있었다.³⁾ 또 司法大學院教育이 司法研修院教育의 한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司法大學院卒業生들이 司法研修院教授를 지냈고 法院行政을 맡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司法大學院教育은 成功한 것이었고 결코 實務家들의 主張처럼 失敗한 것이 아니었다.⁴⁾

3) 사법대학원에서 아시아재단의 도움으로 한국판례를 수집하고 이를 학생들이 comment하여 출판한 것은 판례연구의 초석이 된 것이다.

4)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이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학교수회의 반론

지난 1961년에 도입된 사법대학원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법대학원에도 공과가 있었다.

(1) 공

1) 사법시험합격생에게 다양한 교과목과 외국의 법률제도를 강의함으로써 다양한 세계관에 입각한 법조인을 양성하였다.

2) 사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외국대학에 유학하여 외국의 법조자격을 얻고 또 박사학위를 얻은 국제전문변호사를 많이 양성하였다. 그 결과 법학교수 양성에도 기여하였다.

(2) 과

1) 법조실무교육이 부실하였다고 하나 검찰실무는 잘 되었고 법원실무수습과 변호사실무수습은 법원과 변호사회가 맡아서 했는데 그 때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법연수원에서도 잘 되지 않고 있다.

2) 서울대학교의 재정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지 못하였고 전임교수 확보가 어려웠으나 유능한 졸업생을 외국에 유학시켜 교수요원을 양성하였다. 그들이 사법대학원이 없어서 교수가 되지 못하고 지금은 국회의원, 국제법률회사의 대표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과거 사법대학원이 실패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정부의 지원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재정상태도 그동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전임교수 확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法學教育改善을 위한 提案

1960年代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의 定員은 一時 160名으로 줄었고 法學教育은 教養教育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法曹職業教育은 司法研修院이 擔當하였다. 이에 法學教育과 法曹教育을 連結시키기 위한 試圖가 여러 차례 行하여졌다. 특히 司法試驗應試資格을 法學教育履修者에게 制限하는 問題가 많이 論議되었다. 司法試驗應試資格이 法學士學位와 無關하게 獨學者에게도 認定한 結果 大學教育은 荒廢化하였고 考試學館만이 成長하게 되었다.

이러한 弊端을 없애기 위하여 司法大學院을 두었을 때에는 法學科 3年 課程을 履修한 者에게만 司法試驗應試資格을 주었다. 또 法學科 卒業生의 大多數가 司法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는 主張으로 司法試驗合格者의 增員을 위하여 努力하였다. 그 結果 司法試驗合格者의 定員制가 導入되어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다.

나는 1971年 司法大學院 教務學生課長을 그만둔 뒤 1975年 法科大學 教務擔當 學長補로 就任하게 되었다. 이 時期에 나는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서 教授님들과 함께 法學教育의 改善을 위하여 많은 努力을 傾注하였다.⁵⁾

첫째로는 法學科와 行政學科를 統合하는 努力이 行해졌다. 이것은 1975年 冠岳캠퍼스로 統合하면서 行政學科를 法學科로 統合하여 이루어졌다. 이 課程에서 法學科 以外에 經營法學科, 公法學科 등을 竝設하여야 한다는 案도 登場하여 한 때 公法學科와 私法學科로 分離된 적도 있었다. 그것이 法學部로 統合되어 現在까지 施行되고 있다. 多數學科로 細分化하려 한 理由는 法學科 單科大學으로는 學生定員, 教授定員, 豫算 등에 많은 隘路가 있었기 때문이다. 法學部定員도 1952年の 150名에서 1953年度에 300名으로의 增員이 行해졌으나, 5·16事變으

현재만 해도 Law School 인가를 위하여 100~200명 정원의 대학들의 교수 수가 30~40명이 되고 있다. 법조실무에 종사했던 교수들의 수도 약 5분의 1이 되고 있다.

5) 김철수, 법학교육의 개선방향, 『대학신문』 995호, 1975. 특히 나의 지도하에 具然昌 조교와 林鍾律 조교가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상세한 것은 金哲洙, 具然昌, 林鍾律, 法學教育의 改善方向, 『法學教育과 司法制度改革』, 3~43면 참조.

로 160名으로 減縮되었고 公法學科, 私法學科 兩科時代에는 300名이 維持되었다. 그러나 1990年代 後半에 와서 大學院大學의 旗幟 아래 學部定員이 200名대로 줄어 全員이 司法試驗에 合格하더라도 他 大學의 合格者數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豫測되게 되었다.

둘째로는, 授業年限을 延長하는 것이 論議되었다. 1950年代에는 大學 4年間 180學點을 履修하는 制度였었는데 점점 卒業學點이 줄어들게 되어 140學點으로 줄게 되고 2年間의 敎養敎育 때문에 法學專門敎育의 期間이 2年으로 短縮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5年制案, 6年制案 등이 敎授會에 上程되어 많은 討論이 행해졌다. 當時에 나는 學部 4年, 大學院 2年의 一貫敎育을 하도록 6年制를 主張하였다. 그 理由는 5年制로는 學位를 法學士밖에 줄 수 없으며 3年制專門敎育으로는 多様な 法分野를 全部 消化할 수 없기 때문에 6年制로 하되 卒業時에는 法學碩士學位를 주고 法學碩士學位取得者에게만 辯護士試驗應試資格을 賦與한다는 案이었다.⁶⁾ 그러나 이 案은 敎授會에서의 討論 끝에 5年制案이나 6年制案이 모두 採擇되지 못하였다. 第一 問題가 된 것은 法學敎育을 延長한다고 하여 法學部卒業生이 다시 司法試驗을 치러야 된다면 法學敎育期間延長을 學生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學校敎育을 하나도 받지 않고도 司法試驗應試資格이 賦與되는데 敎育期間을 延長하면 學費만 많이 들고 實益이 없다는 理由였다.

셋째로는 法曹實務敎育의 問題였다. 처음 司法研修生은 40餘名에서 始作하였는데 定員制의 施行으로 300名, 400名, 800名, 1,000名으로 늘어나자 司法研修院生 中에서 判·檢事로 곧 任官되는 사람은 200~300名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른 職業을 가져야만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研修生들이 法學碩士學位를 달라는 要求가 많았다. 나는 司法行政制度改善審議會의 委員으로서 이들의 碩士學位取得에는 贊成하나 實務的으로 敎育部의 認可가 問題된다는 것을 指摘하였다. 國防大學院 등의 境遇에는 敎授들을 文敎部가 정한 敎授資格者를 採用하고 있었

6) 김철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방안 (1)~(6), 『법률신문』 1201~1206호, 1977. 4. 5; 김철수,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1)~(5), 『법률신문』 1257~1261호; 김철수, 법학교육과 법률구조, 『법정논총』(국민대), 1981.

으나 司法研修院에는 그런 基準에 該當하는 教授가 드물고 또 教科內容도 學問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大學과 連繫하여 司法研修院과 서울대를 同時에 在籍하게 하여 法學碩士課程을 取得할 수 있도록 提案하였다. 그러나 이 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司法研修院在籍生들의 不滿도 컸었다. 過去 司法大學院에서는 論文을 쓴 學生들은 碩士學位를 받았고 繼續 進學하여 博士學位를 받아 教授로 登用되는 機會를 가졌는데 司法研修院教育으로는 法學教授나 法學者로의 進入이 制限되게 되었다. 또 辯護士로 大部分이 進出해야 할 現況에서 判事養成을 위한 起案教育에 대한 不滿도 많았기 때문에 司法研修院教育에도 問題가 많았고 점차 이 制度도 많이 改善되었다.

3. 法學教育改善을 위한 Law School案의 擡頭

法學教育期間을 延長하여야 하며 司法研修院의 法曹教育和 連結하는 問題가 많이 論議되었다. 이에 관하여 나는 活潑한 改善方案을 提示하였다.⁷⁾ 내가 서울 大學校 法學研究所長이 된 뒤 1988년에는 『法學教育和 司法制度改革』이라는 論文集을 出版하여 法學教育和 法曹教育에 관한 方向을 提示하려고 하였다.⁸⁾ 이것을 契機로 法科大學에서는 法學教育에 관한 再檢討가 行하여졌고, 1994년에는 教授세미나에서 「法曹養成과 法學教育」이라는 論文을 發表하기도 하였다.⁹⁾

1990年 들어 韓國法學教授會의 會長을 맡게 되어 全國法學教授를 動員하여 法學教育和 司法制度改革을 위해 努力하였다. 특히 法學教育의 改善과 法曹教育의 改善을 위하여 Law School 制度를 導入하도록 主張하였으며 司法試驗合格者의 爆發的 增員을 要求하였다.^{10), 11)} 韓國法學教授會도 法學教育改善과 司法制度改

7) 김철수, 한국법학교육 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법학논총』(한양대), 창간호, 1981, 165-256면.

8) 김철수 편, 『법학교육과 사법제도개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9) 김철수, 법조양성과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1994, 5.

10) 김철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11) 김철수, 한국법학교육은 위기인가, 『사법행정』 18권 6호, 1977. 6; 김철수, 법조인구의

革을 위하여 活潑한 活動을 벌였다.¹²⁾

II. Law School 案의 展開過程

1. 文民政府下の 法學教育改革案

1994년에는 文民政府에서 司法制度改革에 着手할 氣運이 있자 學界와 法曹界, NGO에서 대대적인 Lobby 活動을 하게 되었다. 1994年 5月에는 國民을 위한 司法改革推進聯合會가 結成되어 “國民權益擁護를 위한 憲法裁判所法·法院組織法·辯護士法の 改正에 관한 請願”을 國會에 提出하였다. 이 請願에는 2,130名이 參與하였다.

1994年 1月에는 경실련에서 “市民을 위한 司法改革의 길”이란 討論會가 열렸다. 韓國法學教授會도 1992年에 이미 法曹人口의 爆發的 增加를 要求했으며 法學教育을 받은 사람의 多數가 司法試驗에 合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要求하였다. 1995년에는 法學教授會가 세미나를 열고 法學教育과 司法改革에 관한 建議文을 提出하였다. 그 內容은 ① 法學教育은 4年制法科大學 위에 3年制 司法大學院을 두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4年制 法科大學은 存置하되 司法大學院을 附設한 大學의 法科大學은 廢止한다. ② 司法大學院은 美國式 로스쿨의 無條件的 模倣이 아닌 韓國的 司法大學院이 되어야 한다. ③ 司法大學院은 嚴格한 基準을 갖춘 大學院中心大學에만 設立을 認可한다. ④ 司法大學院의 入學定員은 서울에 2,000名,

증대와 법조교육개선, 『판례월보』 130호, 1981. 7; 김철수, 법학교육과 사법개혁의 기본 문제, 『고시계』 455호, 1995. 1; 김철수, 사법시험의 문제점과 법학교육의 정상화, 『고시저널』, 1995. 4.

12) 상세한 것은 한국법학교수회 편, 『사법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1994, 길안사; 한국법학교수회, 『법학교육 및 사법개혁자료집』, 1995. 5. 26;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교육 백주년, 『법학교육개혁자료집』, 1995. 2. 24 참조.

地方에 1,000명이 되어야 한다. ⑤ 司法大學院의 入學資格은 4年制 大學 卒業者로 하며, 全國의 共通試驗 假稱 司法大學院入學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 한다. ⑥ 司法大學院入學資格試驗의 合格者數는 1996年 1,500名, 1997年 2,000名, 1998年 2,500名으로 한다. 1999年 以後에는 司法大學院의 數에 따라 定員을 定한다. ⑦ 司法大學院 入學資格試驗 合格者를 各 司法大學院에서 3年間 教育시킨 다음 辯護士試驗을 치르게 한다. ⑧ 辯護士試驗의 合格率은 80~90%로 한다는 것이 었다.

이에 대하여 法曹界에서는 ① 大陸法界인 우리나라에서는 美國式 로스쿨이 맞지 않는다. ② 司法改革은 必要 없다. ③ 法曹人口는 GNP에 對比해야 한다. ④ 類似法曹人을 包含하면 法曹人數는 現在도 많다. ⑤ 法曹人의 增員은 法律서비스의 質을 下落시킨다. ⑥ 辯護士數의 增員은 事件 브로커만을 量産한다. ⑦ 法科大學院을 新設하기 위한 人的·物的 施設이 未備하다. ⑧ 司法試驗制度 改革은 機會의 平等을 制約하고 學力差別을 하는 것이다. ⑨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이 失敗했다. ⑩ 現在의 司法研修院制度는 維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들은 5敵을 指定하면서 教授들을 中傷謀略하기도 하였다.

1995年 4月에는 大法院이 “21世紀를 위한 法曹人力養成方案”이라는 세미나를 열어 大體的으로 法曹人養成制度에 대한 劃期的 改革에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였다.¹³⁾ 事實 大法院에는 司法行政制度改善審議委員會가 있어 民間學者들이 繼續 司法試驗制度의 改善과 司法研修院制度의 改善을 主張하였으나 當時의 權威主義的 法院首將에 의하여 拒否되기 일쑤였다. 大法院에서는 司法研修院을 두면서 司法研修院卒業生에게 法學碩士學位授與를 해 줄 것을 願하였으나 教育部에서는 司法研修院教授가 教授資格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難色을 表明하였다.

그러나 大法院은 世界化推進委員會의 壓力에 따라 “法律서비스 및 法學教育의 世界化方案”에 合意하였다. 그 內容은 “世界化時代에 增大되고 있는 多樣하고

13) 법원행정처, 21세기를 위한 법조인력양성방안, 1995. 4; 대법원, 법조개혁건의안, 1995. 반대논의는 한국법학교수회, 사법개혁에 관한 법조계의 비판에 대한 검토, 1995.

專門的인 法律서비스 需要에 副應하고 統一 및 法律서비스 市場開放 등 法曹環境變化에 對應하여 現行 法學教育制度和 試驗制度를 大幅 改編한다”는 것이었다. 法學教育 學制改編의 基本方向은 ① 試驗보다는 教育의 比重을 높이며, 法學教育의 正常化·充實化를 圖謀하기 위하여 基礎素養教育 및 專門領域教育을 強化해 나가는 것, ② 多樣的 學問的 背景을 갖춘 사람이 法曹人이 되는 機會를 充分히 提供함, ③ 이를 위해 새로운 學制를 마련하고 1997년부터 施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試驗의 改編方向으로는 “法學教育이 充實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 學制에 의한 教育履修者에게만 試驗應試資格을 賦與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學制改編의 方向은 ① 專門法科大學院設置案과 ② 法科大學學制延長案을 委員會에서 檢討하여 7월까지 最終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構成된 法大學制委員會는 ① 法學教育機關認可機關, ② 認可要件, ③ 教授陣, ④ 學生選拔方式, ⑤ 學事管理 등에 관해서 合意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學制改編은 大法院과 法曹人의 反對로 霧散되고 말았다.

參考로 韓國法學教授會의 Law School(司法大學院)案의 要旨를 보면 다음과 같다.

[附錄 1]

〈韓國法學教授會의 司法大學院案〉

① 법학교육과 법조교육의 원칙

(1. 2. 생략)

3. 법학교육은 4년제 법과대학 위에 3년제 사법대학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년제 법과대학은 존치하되 사법대학원을 부설한 대학의 법과대학은 폐지한다.

4. 사법대학원은 미국식 로스쿨의 무조건적 모방이 아닌 한국적 사법대학원이 되어야 한다.

5. 사법대학원은 엄격한 기준을 갖춘 대학원중심대학에만 설립을 인가한다.

6. 사법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서울에 2,000명, 지방에 1,000명이 되어야 한다.

② 법조자격시험

7. 사법대학원의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하며 전국적 공통시험(현재의 사법시험의 개선으로 미국의 LSAT, 독일의 사법 제1차 시험을 참작한), 가칭 사법대학원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8. 사법대학원입학자격시험의 실시는 총무처와 교육부가 관장한다.
 9. 사법대학원입학자격시험의 합격자수는 1996년 1,500명, 1997년 2,000명, 1998년 2,500명으로 한다. 1999년 이후는 사법대학원의 수에 따라 정원을 정한다.
 10. 사법대학원입학자격시험 합격자를 각 사법대학원에서 3년간 교육시킨 다음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한다.
 11. 변호사시험은 대법원·법무부·교육부·대한변협에서 공동관리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80~90%로 한다.
- ③ 법조교육기관
12. 사법대학원 교수의 1/3 이상은 법조자격자여야 하며 판사·검사의 겸직이 허용되어야 한다.
 13. 사법대학원의 수업료는 일반대학원의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시행시간표
14. 1998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은 폐지한다. 1995년도 사법시험 합격자 전원을 2년 동안 연수시킨 뒤에는 사법연수원을 법관연수원으로 바꾼다.
 15. 1995년 12월에는 사법대학원입학자격시험을 실시하여 1996년 2월에 사법대학원 학생을 선발한다.
 16. 1996년 사법대학원 신입생의 입학에 맞추어 교수의 수를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

韓國法學教授會案은 當時로서는 最適의 案이라고 생각되었으나 數的으로 많은 辯護士, 判事, 檢事들의 反對로 霧散되었다. 大法院은 世界化推進委員會의 壓力에 따라 司法試驗合格者의 漸進的인 增員에만 合意하고 法學教育改革이나 다른 法曹改革은 霧散시키고 말았다. 大統領의 任期末期와 IMF事態 등의 이유로 司法改革과 法學教育改革이 霧散된 것이 아쉽다.

2. 國民의 政府下에 있어서의 法學教育改革案

1998年 國民의 政府가 出帆하자 教育部傘下에 大統領諮問機關인 新教育共同體委員會가 構成되고 그 下部組織인 法學教育制度研究委員會가 研究 끝에¹⁴⁾

1998年 5月에는 「法學教育制度의 基本方向 - 學士後法學教育의 導入」이라는 中間 報告書를 發表하였다. 이 內容은 그 뒤 最終案으로 確定된 것이었다. 教育部는 有名大學校의 法科大學入試競爭 때문에, 入試의 過熱競爭과 학원과외를 막기 위하여 몇 개의 法科大學을 없애는 것을 目標로 한 것이었다. 이 案에 따르면 現在의 法科大學制度和 새로운 學士後法學教育制度를 並置하는 것이다. 既存制度의 維持로는 4年制 法學部和 一般大學院 法學科로 運營하며 4年制 法學部 卒業者에게 司法試驗 1次試驗資格을 賦與하고 그 뒤에 一般大學院이 法學碩士, 法學博士課程을 現行대로 두도록 하였다. 이 大學院課程은 주로 法學教授要員을 養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法學大學院制度를 두고 3年 卒業時에는 法務博士(J.D)學位를 주고 그 위에 法學博士課程(Ph.D.)을 두도록 하였다. 또 法學大學院은 複合學位課程을 두어 J.D.와 Ph.D.를 함께 取得할 수도 있게 하였다.

새로이 導入하기로 한 法學大學院은 學士後法學教育이라고 불려졌는데 多樣한 專攻의 學士課程卒業生을 對象으로 大學院 레벨에서 法曹人을 養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 法學大學院을 두는 大學은 既存의 法學士課程은 廢止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法學大學院의 授業年限은 6學期(3年)로 하고 96學點 以上 履修하여야 卒業할 수 있게 하였다. 卒業生에게는 法務博士學位(J.D.)를 賦與하고 司法試驗 1次試驗을 免除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2次試驗에서는 一般인과 같은 資格으로 競爭하게 되며 출원횟수는 줄이도록 하였다. 司法試驗의 內容은 法學大學院의 教育內容과 連繫를 가지도록 改善하기로 하였다.

法學教育制度研究委員會案을 圖示해 보면 [附錄 2]와 같다.

그러나 이 案은 司法府나 法務部, 辯護士會와의 合意 없이 法學教育만 獨立하여 專門大學院制度를 導入하려고 한 점에서 失敗할 수밖에 없었다. 現在와 같은 司法試驗 1次試驗과 2次試驗을 並存시키는 경우 1次試驗 免除를 받기 위하여 3

14) 당시 나에게도 참여교섭이 있었으나 법조의 참여 없는 법학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양건 교수 등 韓國法學教授會案에 찬성한 학자들은 참여를 거부하고 최대권 교수 등이 주동적으로 활동하였다. 상세한 것은 최대권, 『법학방법론』, 2003 참조.

[附錄 2]

현재의 법학교육		법학교육의 개선안	
법학교육	법률가 자격 부여	법학교육	법률가 자격 부여안
고등학교교육(3년)	사법시험 1차시험	고등학교교육(3년)	
↓	↓	↓	
학부법학교육(4년)	사법시험 2차시험	학부교육(4년)	법학전공 → 사법시험 1차시험
법학사	↓	↓	법학사 ↓
↓	사법시험 3차시험	일반대학원	복합학 법과대 → 사법시험 2차시험
일반대학원	↓	법학박사(Ph.D)	위과정 학원(3년) ↓
법학박사(Ph.D)	사법연수원(2년)	↓	(J.D.+ 법무박사 실무연수
↓	↓	↓	Ph.D.) (J.D.)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요원 법률가 자격		↓
			박사과정
			법학박사(Ph.D.) ↓
		↙	법학교수요원
			법률가 자격

年の 法學大學院 進學者가 많을 것인지도 憂慮되었고 司法研修院 教育의 改善論議 없이 法學教育의 改善만 研究한 데 盲點이 있었다. 教育部는 이 案에 따라 法科大學에 대한 評價를 하고 法學大學院認可를 하려고 하였으나 既存의 法學部 廢止를 反對하는 教授와 大學當局에 의하여 거의 廢案되고 말았다. 이 法學大學院制度는 醫學大學院制度和 함께 特定有名大學의 法學부와 醫學부를 없애서 大學入學의 過熱을 막겠다는 發想에서 나온 것으로 그 動機가 純粹하지 못했다.

3. 參與政府下的 改革論議

21世紀에 들어와서 司法改革論議가 다시 活潑해졌다. NGO들은 다시 司法改革을 要求하기 始作하였다. 法律消費者聯盟은 法學教育의 改善을 要求하면서 既存의 法學部는 教養法學教育機關으로 두고, 學部課程을 나온 大學의 卒業生들이 大學院課程으로 2年 내지 3年 동안 法學教育을 實務的으로 하도록 勸告하고 있

다. “專門法科大學院을 통해 專門的인 法曹人이 誕生하고 一般大學校의 法學科를 통해 法을 아는 市民이 養成된다면 우리나라의 法治主義가 더 빨리 發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專門法科大學院의 早速導入을 要求하면서 이를 통한 辯護士들의 質的 水準向上을 期待하고 있다.¹⁵⁾

法律市場開放과 함께 질 좋은 辯護士를 確保하여야겠다는 日本經濟人들의 要求로 日本에서도 法學教育의 改善과 司法改革이 推進되게 되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日本의 司法改革의 요체는 法科大學院制度로의 法曹養成制度轉換이다. 이 法科大學院構想은 우리나라의 論議를 벤치마킹한 感이 있다.¹⁶⁾

日本에서는 法務部와 教育部, 辯護士協會, 法科大學 등이 共히 法學教育을 改善하여야 한다는데 共感하여 2002년에는 司法制度改革推進法案이 提案되었고 2003년에는 參議院을 通過하여 2004년부터 法科大學院이 設立되게 되었다. 각 大學은 2004년 봄부터 法科大學院을 開校하였으며, 2006년 첫 卒業生을 輩出하게 되었다.¹⁷⁾ 既存 法學部는 그대로 둔 채로 法科大學院을 두고 法科大學院 卒業者에 대하여 法務部主管으로 司法試驗을 實施하며 司法研修所도 그대로 存置한다는 점에서 美國式 로스쿨과는 다르고 우리나라의 1999년 法學教育制度研究委員會案과 거의 같다고 하겠다.

이에 刺戟되어서인지 韓國에서도 새로이 法學教育改革이 論議되게 되었다. 大

15) 법률소비자연맹, 사법자치와 사법정의구현을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며, 참고.

16) 양건(미야자와 세쓰오 譯), 한국에 있어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개혁, 『법률문화』, 1996년 1월호;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 중간보고서 「법학교육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학사후법학교육의 도입」(미야자와 세쓰오 감역, 이동훈 譯), 『고베법학잡지』 제49권 2호; 이동희, 오쓰카 히로시 역, 한국에 있어서의 법과대학원구상, 『월간사법개혁』 1999년 12월호 59~62면.

17) 상세한 것은 법률시보 增刊, 사법개혁 I, 법조양성 - 로스쿨구상, 일본평론사 2000; 『월간사법개혁』 1999. 12, 2000. 1, 기타호; 고상왕, 일본의 법학교육, 『세계화시대의 법, 법률학』(한국법학교수회 편), 69~98면 등; 김창록, 일본법과대학원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법학전문대학원, 어디까지 왔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2003; Malcom Smith, Foreign Law Education in Japanes Law Schools, 成均館大學校, 世界化時代의 法學教育方法, 2006, 33~53면.

法院은 「司法發展을 위한 向後推進課題」라는 2003年 1月 報道資料에서 “司法試驗應試者가 年間 30,000名 以上에 달하여 大學이 考試學院化되고 社會 各方面의 優秀한 人才들이 司法試驗에 集中되고 있으며 應試生의 年齡도 갈수록 高齡化되고 있는 實情이어서 國家的으로 人力浪費가 深刻하다는 批判이 있음, 위와 같은 現行 法曹人養成制度의 여러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大法院은 法學專門大學院制度(로스쿨)에 대하여도 前向的인 姿勢로 檢討함은 물론, 韓國司法大學院制度를 비롯한 그 밖의 法曹養成問題에 關하여 深層的인 研究·檢討를 할 豫定”이라고 發表하였다.¹⁸⁾

그 뒤 大法院은 傘下에 司法改革委員會를 設置하여 그 案件의 하나로 “法曹人養成 및 選拔制度改善案”을 討議하였다.¹⁹⁾ 그 內容은 ① “試驗에 의한 選拔에서 教育에 의한 養成”으로 法曹人養成制度의 基本틀을 變更함, ② 多樣한 專攻의 學部卒業者를 對象으로 專門大學院에서 專門法學教育을 實施, ③ 法學專門大學院의 教育을 充實하게 履修할 경우 容易하게 辯護士資格을 取得할 수 있도록 法曹人選拔制度를 改編함으로써, 法學教育과 法曹人選拔 사이에 一定한 連繫를 構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法學專門大學院을 設立하여 그 卒業者의 多數를 辯護士試驗에 合格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具體的 內容은 ① 認可主義, ② 嚴格한 設置認可基準 및 審査, ③ 總入學定員의 制限 등이었다. 入學資格은 學士學位所持 以上으로 하고 最少授業履修學期는 原則的으로 6學期(3年) 以上으로 하고 嚴格한 事後評價를 하며 法學專門大學院 修了者에게만 應試資格을 賦與하고 應試횟수도 制限하되 法學專門大學院 修了者의 80% 以上이 合格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⁰⁾

이 案에 대하여 司法改革委員會는 2004年 9月 20日에 討論을 하였다. 大韓辯護士協會는 大法院의 原案에 대하여 로스쿨制度의 導入을 延期하고 當分間 現行制度를 改善해 나가자고 하였다. 그 案으로서 法學部 卒業者 또는 多樣性을 위해

18) 대법원보도자료, 사법행정을 위한 향후추진과제, 2003. 1.

19) 법조인양성 및 선발,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자료, 제1분과 전문위원 연구반, 2004. 1. 15;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양성 및 선발공청회, 2004. 4. 26.

20) 대법원, 법조인양성 및 선발제도개선안, 2004. 9. 6.

공청회의 개요에 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kj50html> 참고.

法科大學에서 一定學點을 履修한 者에게 辯護士資格試驗應試資格을 賦與하되 應試횟수를 制限하기로 한다. 司法試驗을 辯護士資格試驗으로 轉換하는 것을 檢討하고 1次試驗에서는 多様な 選擇科目을 試驗科目으로 하며, 2次試驗은 케이스問題를 提示하여 分析力을 테스트하도록 主張하였다. 司法研修院의 數를 制限하되 研修院을 釜山, 光州, 大邱, 大田 등 高等法院管轄地域에 分散하기로 하였다.²¹⁾

國防部所屬의 박주범 委員은 “國立法律大學院” 新設案을 提案하였다. 그 骨子는 司法研修院을 國立法律大學院으로 改稱하고 自律性を 提高하며 國庫負擔을 輕減한다는 것으로, 一般法科大學院으로 學點連繫하여 學問的 研究機能도 補完하자는 것이었다. 學部の 法學專攻課程教育을 充實히 마친 자를 對象으로 國立法律大學院生을 選拔하여 同大學院을 誠實하게 履修할 경우 容易하게 辯護士資格을 取得할 수 있도록 法曹人 選拔·養成制度를 改編함으로써, 既存 大學法學部の 施設과 人力을 最大限 活用하고 大學教育의 正常化를 誘導함과 同時に 法曹人選拔과의 一定한 連繫를 構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既存의 司法研修院을 國立法律大學院으로 改編하되 司法試驗을 大學院入學試驗으로 대체하며 學生數는 現司法研修院生 數로 固定하려는 것이 아닌가 疑心되었다.

國立法律大學院은 원래 法務부와 檢察에서 主張했던 것인데 司法改革委員會 第20次 會議에서는 法務部 代表가 이 案은 法務부의 確定된 案이 아니었다고 하며 大法院의 法學專門大學院案에 贊成하고 있다. 專門委員 中에도 大法院의 法學專門大學院案에 反對하는 見解가 있었고, 로스쿨이 雨後竹筍처럼 量産되는데 대한 反對가 많았다.²²⁾ 이 밖에도 多様な 意見이 提出되었다. 一般的으로 法學教授出身委員들은 選拔人員을 2,500名 程度로 늘여야 하며 法學大學院 設立大學의 法學部 廢止는 段階的으로 하자고 主張하였다. 이에 反하여 辯護士들은 入學定員을 1,200名 以下로 할 것을 固執하였다. 法務부는 法務부측 專門委員이 提出한 바 있는 國立法學專門大學院案은 法務부의 公式立場은 아니었다고 하고 法務部

21) 상세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의견, 2004. 9. 20. 참고.

22) 문재완, 로스쿨 도입과 법과대학개혁의 동시추진필요성, 사법개혁위원회 제19차 회의자료, 2004. 9. 6.

內部討論結果 基本的으로 大法院案과 意見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委員 間에 大法院案을 中心으로 討論한 結果 2004年 10月 4日에 結論을 내기로 했다.²³⁾

2004年 10月 4日 司法改革委員會는 表決로써 로스쿨 導入案을 決定하였다. 로스쿨 導入案은 委員 3분의 2 以上の 多數로 議決되었고, 로스쿨 入學定員과 關聯해서는 司法試驗合格者數를 基準으로 로스쿨 定員을 정한다는 多數意見과 함께 法曹人力 需給狀況을 考慮, 適正水準으로 維持한다는 原則論的인 少數意見이 採擇되었다.²⁴⁾ 專任教授 對 學生比率이 1:15나 1:12나를 놓고, 그리고 專任教授 最少人員은 20人이나, 25人이나를 놓고 多數·少數意見이 엇갈렸으며 實務家(辯護士資格者)教員의 任用도 教員比率과 判事, 檢事, 辯護士 外 法律有關機關 實務經歷者의 包含 與否에 대해 意見이 나뉘었다. 로스쿨 1個校 당 入學定員, 로스쿨의 地域的 配分 등에도 尖銳한 利害關係가 對立되었으나, 추후 教育部, 法院, 法務部 關係者를 中心으로 꾸러질 實務陣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多數意見은 入學定員 問題에 대해 現司法試驗合格者數 1千名을 考慮할 때 1,200名 程度가 바람직하다는 前提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專任教授 對 學生比率이나 專任教授 最少人員을 考慮하면 로스쿨 1個校 당 入學定員은 150名 안팎이 適切하고 어떤 境遇라도 200名을 넘어서는 안 되도록 했다. 로스쿨 數는 많을 경우 10餘個 大學에 이르고 地域按配를 考慮, 5個 高等法院管轄地域마다 最少 1個 以上の 로스쿨이 設置된다고 假定하면 서울所在大學 中에는 5個 안팎의 로스쿨이 設立될 것으로 觀測된다고 한다. 그러나 로스쿨 定員, 設立基準 등도 추후 論議過程에서 確定되거나 內容이 變更될 餘地도 남아 있었다.

이 司法改革委員會案은 大法院長에게 建議되었다.

23) 사법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 개요.

24) 대법원 홈페이지의 제21차 회의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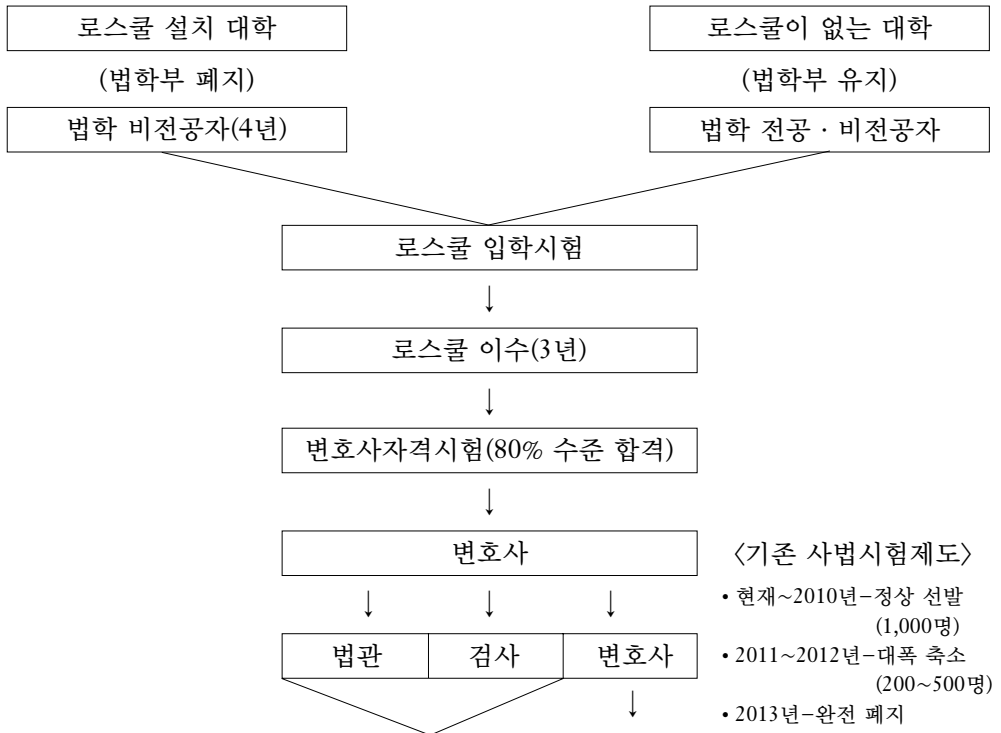
4. 司法改革推進委員會案

政府에서는 2005年 司法改革推進委員會를 構成하여 이 案을 推進하기로 하였다. 教育部·法務部·大法院이 細部事項을 協議한 뒤 法律案을 만들어 國務會議에 提出하고 國會에서 議決하도록 하였다. 로스쿨 導入 뒤의 法曹人 選拔·養成 節次를 보면 다음과 같다.

[附錄 3]

〈司法改革推進委員會案〉

로스쿨 도입 뒤 법조인 선발·양성 절차



[자격시험성적 등으로 법원·법무부 자체 선발] [지역별 자체 연수]

위와 같은 司法改革推進委員會의 로스쿨案에 대해서 言論界에서는 大體적으로 歡迎하고 있다. 1994年 로스쿨 導入이 論議된 때 大法院, 法務部, 辯護士團體의 反對에 부딪혀 挫折된 法學專門大學院案이 大法院의 主導로 辯護士團體의 反對를 무릅쓰고 司法改革委員會를 通過하였기 때문에 司法改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言論들은 贊成하고 있다. 그러나 言論界에서도 現在의 法科大學의 存立問題와 定員過疏問題에 대해서는 憂慮를 表하고 있다.

각 法科大學에서도 로스쿨 導入이 期待 可能한 大學은 大體적으로 歡迎하는 반면 로스쿨 導入이 無望한 大學에서는 反對하고 있고, 로스쿨 設立可能 與否의 限界線上에 있는 大學에서는 로스쿨 設立을 위한 無限競爭에 突入한 것 같다. 각 大學이 法大建物과 模擬法廷, 圖書館을 新築하였고 法曹實務教授들을 大舉 迎入하였다.

辯護士團體는 로스쿨의 定員을 1,200名 程度로 줄이고 辯護士資格 있는 教授 要員을 多數 拔擢하는 前提下에서 積極反對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로스쿨의 定員이 늘어날까봐 消極적으로 反對하고 있다.

一般的인 輿論이 司法改革의 一環으로 司法試驗制度를 없애고 法學專門大學院 制度를 導入한 후 辯護士試驗을 치르게 하는 것에 好意的인 것 같다.

5. 司法推委案의 法學專門大學院制度에 대한 檢討

(1) 法學教育年限의 延長: 日本式 法科大學院이나 美國式 로스쿨이나

現在 法學부의 教育은 司法試驗準備教育에 치우치고 있으며 學生들 또한 司法試驗科目의 受講에만 置重하고 高學年이 되면 考試學院에서 試驗技術을 익혀 온 弊端 때문에 法學教育의 改善은 時急한 課題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63年에서 10年間 美國式 로스쿨의 韓國版이라 할 司法大學院制度가 存在했지만 當時만 하더라도 法曹養成에 대한 意識이 不足하여 成功할 수 없었다. 司法大學院制度 導入에 따라 원칙적으로 法學部 卒業生만이 司法大學院에 入學할 수 있었고 그들만이 法學碩士學位를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進一步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法曹養成制度로서 司法大學院이 廢止된 原因은 法學教授들의 全的인 支持를

받지 못했고, 또 劣惡한 財政形便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第一 큰 問題點은 法曹에서 大學이 法曹人을 養成하는데 대하여 非協調的이었기 때문이었다. 大法院長이 바뀌자 日本式 司法研修所制度를 導入한 것은 過去의 徒弟式 教育에 대한 鄉愁와 法院豫算增額을 위한 한 方便이기도 하였다. 그 뒤 司法研修院制度는 法曹人에 의한 實務教育中心이었기 때문에 過去의 判例를 暗記하는데 置重하였으며 判·檢事 養成에 置重하였다.²⁵⁾ 이러한 司法研修院制度에 대한 批判으로 1994年 世界化推進委員會와 法學教授會에 의하여 로스쿨(司法大學院) 導入이 主張되었다. 過去 大法院과 法曹界가 決死反對하여 로스쿨 制度의 導入이 政權交替로 霧散된 것은 앞에서 본 바였다.

그 뒤 法學科의 入試過熱을 막기 위하여 1998年에 생긴 새 教育共同體委員會의 法學專門大學院案은 法曹界와의 協議 없이 教育部 單獨으로 法學教育의 年限을 늘리려 한 것으로 法學專門大學院 卒業者에 대하여 司法試驗 1次試驗을 免除해 주려는 것이었다. 이 案은 잘 나가던 法科大學의 學部를 없애려는 것이 主目的이었으므로 서울大學校를 비롯한 有數한 大學의 反對에 부딪혀 霧散되었다.

2004年 司法改革委員會가 司法試驗制度를 廢止하고, 로스쿨을 導入하며 로스쿨 卒業生에게만 辯護士資格試驗 應試資格을 주게 한 것은 1995年度의 世界化推進委員會와 法學教授會案을 受容한 것이라 하겠다.

그동안 法學教授들은 法學教育의 內實化를 위하여 法學教育期間의 延長을 主張해 왔는데 1999年 5月 一部教授들은 5·6年制 法科大學과 法學大學院案을 提出했는데 이 案은 法科大學이나 法學大學院 修了者에게만 司法試驗應試資格을 賦與하려는 것이었다. 이 案은 法學教育과 司法試驗應試資格을 連結시킨 점은 좋으나 養成에 의한 法曹人選拔과는 距離가 있었다.

辯護士團體와 法務部 등은 既存의 틀을 維持하면서 司法研修院을 韓國司法大學院으로 轉換하고 在學生의 身分을 準公務員이 아닌 學生身分으로 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大法院이 既得權을 維持하면서 2年間 法曹人이 大學院教育을 맡고 大

25) 사법연수원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임지봉 전문위원 의견, 전계 법조인양성 및 선발, 2004. 1. 5, 6면 참고.

學院修了後 1年間 職域別 研修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既存의 法學教育의 發展은 考慮하지 않고 法曹教育만 強調한 것이어서 問題가 있었고 法學界의 反對로 霧散되었다.

2004年 日本이 司法改革의 一環으로서 法科大學院制度를 導入하자 우리나라에서도 日本式을 導入할 것이냐, 美國式을 導入할 것이냐 論爭이 되었다.²⁶⁾ 日本式이나 美國式이나 다 같이 法學教育과 法曹教育을 一元化하여 大學院卒業生에게만 辯護士資格試驗應試資格을 주고 있는 것은 같다. 다만 美國式은 法學부가 없는 대신 日本式은 法學部를 並置하고 있는 점이 差異가 난다. 日本式은 法學履修者의 경우 2年 만에 法科大學院을 卒業할 수 있게 한 점이 美國式과 다르다. 美國式은 法學教育을 받지 않은 法學未履修者에게 3年間 法學教育을 시키고 있으며 日本에서는 法學既履修者의 在學期間은 2年으로 하고 法學未履修者의 在學期間은 3年으로 하였다.

法學教授들도 法學教育의 年限을 延長하는데 대하여는 贊成하고 있는 것 같다. 5年制나 6年制案이 一般的인데 4年制 法學부에 2年制 法學大學院案을 더 選好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輿論調査(法律저널)에 의하면 300名 中 118名의 應答者 中 46.4%가 4年制 法學부에 2年制 法學大學院을 選好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既存制度和 法曹實務教育을 統合하여 大學에서 管掌하는 것이며 日本의 法科大學院案과 비슷하다.

이에 대하여 法學大學院을 둔 大學에서는 學部를 廢止하려는 것은 美國式 로스쿨案이다.

사실 法學教育의 年限을 延長하여 法的 問題解決能力을 갖춘 法曹人을 養成하기 위해서는 日本式 制度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法學既履修者와 法學未履修者를 한 講義室에서 講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司法試驗合格者는 法學既履修生이 大部分을 차지할 可能性이 많다. 그래서 法學部를 완전히 廢止하고 法學專門大學

26) 일본식 법학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김창록, 일본법과대학원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법학전문대학원 어디까지 왔나, 부산대학교, 93면 이하; 법학교실별책, 『법과대학원 핸드북』, 2004 등 참고.

院만 두자는 意見도 많다.

(2) 贊反論議內容

法學專門大學院制度에 대하여도 贊反兩論이 있다. 全國法科大學學長協議會는 2004年 9月 14日 로스쿨案에 反對하는 聲明을 發表하였다. 아마 그 理由는 定員 減縮과 設立認可主義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로스쿨案은 ① 法曹利己主義에 지나치게 치우친 점, ② 法學教育正常化에 背反, ③ 大學自律性 侵害 등의 理由를 들고 있다. 다른 反對者들의 理由는 ① 公式授業年限의 長期化로 인한 지나친 進入制限, ② 實務教育機能에 대한 懷疑, ③ 考試浪人 대신에 法學專門大學院入試浪人 量産憂慮, ④ 많은 資格者를 輩出함으로써 質의 低下를 가져온다고 하며, ⑤ 辯護士의 過剩供給으로 인한 市場攪亂 등을 들고 있다.

로스쿨 贊成論者들은 ① 人文·社會·理工界 卒業生들에게도 入學資格을 賦與함으로써 多様な 專攻의 辯護士를 育成할 수 있다. ② 考試浪人들이 일찍 斷念할 수 있게 하여 人的 浪費를 막을 수 있다. ③ 大學院養成課程에서 社會不適應者를 淘汰할 수 있으며, ④ 多様な 人的 資源을 活用할 수 있도록 法曹教育을 多樣化할 수 있다는 등의 理由를 들고 있다.

法學專門大學院 反對論者는 司法試驗의 應試資格을 制限하는 것은 平等權과 職業選擇의 自由를 侵害한다고 主張한다. 이것은 辯護士資格制度의 趣旨에 違反되는 主張이고 이러한 基本權도 公共福利를 위하여 法律으로써 制限할 수 있기 때문에 法律으로써 法學專門大學院 入試資格을 制限하는 것은 合憲이다. 考試浪人 대신에 法學大學院入試浪人이 생겨 改善의 效果가 없다고 하나, 보다 젊은 나이에 다른 職業을 選擇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할 수 있다. 또 法學專門大學院의 亂立으로 資格者를 量産하여 質의 低下를 가져온다고 하나 이는 法學大學院의 定員이나 辯護士試驗合格率의 調整만 하면 된다. 辯護士市場의 過剩供給을 憂慮할 것은 아니고 辯護士의 職域擴大를 기해야 한다.

III. 法學專門大學院設置와運營에관한法律案

1. 內容

政府는 司法改革推進委員會의 建議를 받아들여 Law School 制度를 導入하기로 하여 法學專門大學院設置와運營에관한法律案을 2005年 10月 27日 國會에 提出하였다.

이 法案은 全文 47條와 附則으로 되어 있다. 政府案의 提案理由와 主要內容과 檢討意見을 보면 다음과 같다.

[附錄 4]

〈法學專門大學院設置에 관한 政府案의 內容과 檢討意見〉

1. 제안이유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²⁷⁾

2.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제6조 및 제10조)

- (1)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법학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을 위하여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설치인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가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7) 국회교육위원회계류안건.

-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여부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법학교수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
- (3)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인가과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인가과정에서 시설·교원 등 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목표·교육과정 등 질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법학교육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안 제16조 및 제17조)

- (1)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전체 교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교원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법학전문도서관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함.
- (3)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폭 넓은 선택과목·세미나·토론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충실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이 가능하게 되며, 장학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평가(안 제27 내지 제29조)

-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담보할 수 있는 사후평가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2)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교수·판사·검사·변호사·일반 시민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도록 함.
- (3)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유지·발전시키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검토의견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안 제7조

안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과 협의하여 총 입학정원을 정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은 인가주의와 결부되어, 일정 수의 대학 외에는 더 이상 인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는 바, 인가 거부된 대학의 평등권 및 자율성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총 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 법학교육 최종수요자인 시민, 법학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 반영 기회가 미약하고, 정부정책결정이 이익단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의학분야 정원결정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의사단체 등과 직접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 입학정원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안 제11조

안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에 의하면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인,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폐지 및 변경 인가를 심의하는 중요기구로서 법률서비스의 직접수요자인 경제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 교원 등: 안 제16조

안 제16조(교원 등) 제4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원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무경력교원은 겸임교원으로 확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제정안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목적에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5

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교원 비율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려는 입법취지이나, 안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체 입학자 중 3분의 1 이상을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입학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서 살펴볼 때, 국제변호사나 국제기구, 공공기관, 공익단체 등에서 법률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도 교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안 제28조 및 안 제29조

안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하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안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인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 중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주체라는 점에서 평가의 중립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세부심사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인가기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도 기본적으로 법학교육기관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하에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마. 제재조치의 건의: 안 제36조

안 제36조(제재조치의 건의)에 의하면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시설, 수업 및 학사 등에 관하여 위반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시정명령·정원감축·학생모집 정지 및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는 대개의 경우 법령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하는 것인 바, 법령위반과 관계없이 추상적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건의하는 것은 피 평가법학대원들이 재량권 행사의 방향이나 결과에 대하여 예측하기 곤란하게 하고,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또한, 교육이념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기준 등이 객관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가 및 제재 건의조치의 신뢰성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바,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바. 인가취소: 안 제41조

안 제41조(인가취소) 제2호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대학과 관련된 교육관계법령이라는 요건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바, 국민의 입장에서 재량권 행사의 예측가능성이 적고,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성이 없는 명령위반에 대해서도 인가취소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부담적 규정은 수익적 규정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인가취소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그 밖의 검토사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논의된 것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인 동시에 법조인 양성기관이므로, 법조인 선발제도와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임.

가령, 총 정원의 제한 여부 및 학생 선발방법 등은 변호사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이나 선발기준, 선발방법 등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사항임.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2008년도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이 어떤 형태로 연계될지가 현재 고등학생이나 법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법시험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이전에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 審議結果

이 案은 國會教育委員會에 回附되어 小委員會에서 檢討하고 있다. 2006年 2月 15日에는 國會에서 公聽會가 열렸는데 教授들과 辯護士, 市民團體 間에 大論爭이 벌어졌다. 法學教授들은 原則적으로는 法學專門大學院設置法案을 贊成하면서 合格者 總 定員을 미리 정하고 司法試驗의 應試資格과 合格率을 정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總 定員에 대해서는 規定하지 않고 法院行政處長, 法務部長官, 大韓辯護士協會

會長, 法學教授會長과 協議하여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國民에 대한 法律서비스의 圓滑한 提供 및 法曹人的 需給 狀況 등 諸般事情을 考慮하여 總 定員을 정하도록 하였다. 個別法學專門大學院의 定員도 總 定員 範圍 內에서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정하도록 하였다.

法學專門大學院의 認可는 教育部傘下의 法學教育委員會가 하나 그 評價는 大韓辯護士協會下의 評價委員會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法學大學院의 設置基準 및 運營에 대해서는 法律이 詳細히 規定하고 있다. 敎員은 1人當 學生 數 15人 以內의 範圍에서 정하며 實務法曹人 敎授는 1/5로 하였다. 法學專門大學院에는 學位 課程으로 碩士課程과 博士課程을 둘 수 있으며 研究生課程도 둘 수 있게 하였다. 日本과 달리 法學專門大學院을 設置하는 大學에는 法學部를 廢止하도록 하였다.

入學資格은 學士學位를 取得한 者로 하며 適性檢査에 合格한 者 中에서 一般銓衡 또는 特別銓衡에 의하여 選拔하도록 하였다. 또 學生構成의 多樣化를 위하여 法學未履修者를 1/3 以上 選拔하여야 하고 他 大學 卒業生을 1/3 以上 合格시키도록 했다.

法學專門大學院의 教育理念은 國民의 多樣한 期待와 要請에 副應하는 良質의 法律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豊富한 敎養, 人間 및 社會에 대한 깊은 理害와 自由·平等·正義를 指向하는 價値觀을 바탕으로, 健全한 職業倫理觀과 複雜多技한 法的 紛爭을 專門的·效率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知識 및 能力을 갖춘 法曹人的 養成에 있다고 하고 있다. 이 案에 대해서는 參與聯帶의 改善意見이 共感을 얻고 있다.

[附錄 5]

[표] 정부안에서 개선되어야 할 각 조항과 참여연대의 개선의견

쟁점	정부제출안	대한변협	참여연대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통과 희망 - 사개위 및 사개추위 논의를 통하여 사회 각 계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존중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이를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 다만, 입법취지를 달성하게 못하게 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제출안의 일

쟁점	정부제출안	대한변협	참여연대
		- 원안 수정 시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반대	부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총 입학정원의 결정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회장, 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법안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유지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기관이므로 정원결정에 법조관련기관 참여는 필수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총 입학정원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에 반대함. 다만 시행초기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총 입학정원 설정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임. - 설령 총입학정원 통제조항을 두더라도, 사실상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등 사실상 '법조인들의 합의'가 필요하게 만든 현재 정부제출안의 정원결정과정은 개선되어야 함. - 최소한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법학교수회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변협회장, 법원행정처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안은 수정되어야 함.
총 입학정원의 규모	- 명시적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명 - 시행 초기에는 현 사법시험 합격자수(약 1,000명)를 감안하여 입학정원을 정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령, 총 입학정원을 통제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 한시적인 제한으로 2,000~3,000명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의 사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제도 시행 후 가까운 시일내 총 입학정원에 대한 통제를 없애야 함.
설치인가	- 교육부장관이 법학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함(법안 제6조 및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유지 - 교육의 질 관리와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서 설치인가제의 도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준칙주의이어야 하나 제도 도입 초기 등을 감안하여 시행초기에는 인가주의를 고려할 수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사후 평가 기구	- 대한변협 산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함(법안 제27조 및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유지 -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서 공익성 확보. - 대한변협은 법조실무에서 가장 전문성이 높음. - 미국과 일본도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평가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변협에게 평가기관의 지위를 선택적으로,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이 평가 담당하도록 하는 평가기관 인증제이어야 함. - 대한변협이 평가인증기관의 지위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일 뿐만

쟁점	정부제출안	대한변협	참여연대
			아니라 정당성이 없음. - 미국 ABA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학교수가 평가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평가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어 법안과는 다름.
사후 평가의 효과	-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시정명령, 정원감축, 인가취소를 건의할 수 있음(법안 제36조).	• 원안 유지 -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제재 건의 필요. - 평가위는 제재건의권만 가지며 제재여부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함.	• 제재건의는 사실상 구속적 효과를 가지게 됨에도 주관적 요소가 포함된 평가를 바탕으로 그 사적 기관인 평가위원회가 국가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를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침.
법학교육위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 법학교수 4, 판사 1, 검사 1, 변호사 2, 공무원 1, 일반인 2 등 11인 (법안 제11조). - 설치인가, 개별정원의 결정은 위원 2/3 이상 찬성, 기타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령안 제6조).	• 원안 유지 - 변호사는 2인에 불과하므로 변호사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대표에 비해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법조인들의 대표가 지나치게 많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 이상임을 감안하였을 때 특정지역이나 법률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비토(veto)가 가능해짐. - 따라서, 설령 구성방식에서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대표성을 높이거나, 설치인가 및 개별정원의 결정의 경우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만큼 의결정족수는 1/2 이상으로 수정해야 함.
실무교원 기준	- 변호사자격이 있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전임교원을 1/5 이상 확보(법안 제16조).	• 원안 유지 - 법조 실무교육을 위해서 법조출신 실무경력교원 필요.	• 실무경력자 교원의 경력인정기준이 국내변호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의 법률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무경력교원의 자격을 확대하도록 수정할 필요 있음.
기타 인가 기준	- 학생 12인당 교원 1인 이상. - 20인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법률안 제16조 등).		• 설치기준이 미국·일본 등에 비해 너무 과중하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드는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보장하면서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검토해야 함.

쟁점	정부제출안	대한변협	참여연대
변호사 선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사개추위에서 현재 사개위 건의안을 바탕으로 논의 중으로 추후 법무부에서 입법추진 <사개위 건의안> - 정원제인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응시자격 부여,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사법시험 병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스쿨제도의 핵심은 대학에서의 교육과 변호사자격을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것에 있음. - 현 상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변호사자격에 관한 법률의 내용 여하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정원제인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3. 問題點

이 案은 教育委員會의 류충현 首席專門委員이 前掲 檢討書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첫째로는 卒業試驗格인 辯護士試驗과의 連繫가 되어 있지 않고 또 入學總定員을 法曹界의 意見에 依存하게 하고 있다. 또 大學의 自律을 侵害하고 法學教育委員會에 實務家를 많이 넣고 있는가 하면 專門大學院 評價는 大韓辯護士協會에서 主管하도록 하고 있다. 法學專門大學院의 設立認可나 指示·命令權, 評價權 등이 教育人的資源부와 法曹界에 偏重되어 있어 大學의 自律性을 侵害할 問題가 대두되고 있다.

法學專門大學院의 設立으로 그 認可, 存續, 評價 등에 대한 法曹實務機關의 權限이 莫大해졌다. 이는 法學專門大學院이 法曹人에 의한 法學教育 接收요, 統制로 비쳐지고 있다. 심지어 法曹職域에 의한 法學教育의 信託統治라는 批判까지 나오고 있다. 이 境遇 과연 大學의 自律性이 保障될 수 있는 지 疑心스럽다. 이대로 간다면 法學專門大學院은 現 司法研修院의 分割처럼 될 것이다. 設立主體가 大法院에서 法學教育委員會로 變更된 것 밖에 안 될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法學教育을 위해서는 法學部教育이 充實해져야 한다. 30~50名の 定員을 가지고 4~5名の 專任教員을 가진 大學에서는 基礎法學教育조차 兪게 할 수 없으니 여러 法學部가 統合하여 質을 向上시킨 境遇에는 法學專門大學院의 竝設을 承認하는 方向으로 가야 한다. 法學專門大學院의 濫設을 막기 위하여 教育部가 設立 認可主義를 採擇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準則主義로 가야 한다. 法學教育의 改善은 專門大學院教育의 改善뿐만 아니라 學部法學教育改善도 重要的 만큼 法學部の 教育競爭力을 提高하고 內實化를 期하도록 하여 法學專門大學院을 附設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한다. 法學專門大學院을 設置하는 大學은 法學部를 廢止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法學部廢科與否는 大學의 自律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도 司法改革推進委員會와 政府가 法學專門大學院의 總 定員을 1,200名 程度로 하고 試驗合格者를 1,000名の 現 水準으로 凍結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贊成할 수 없다. 法曹利己主義에 置重하여 法曹職域의 進入障壁을 쌓기 위하여 法學專門大學院의 數를 줄이고 定員을 줄이는 것은 理解할 수 없다. 法曹團體에서는 法學專門大學院의 總 定員을 1,200名 程度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市民團體와 法學教授들은 2,000名 以上으로 增員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國會教育委員會小委員會에서는 總 定員을 2,000名 내지 3,000名으로 하기로 했다 하나 이것은 法司委員會에서 否決될 可能性이 크다. 法司委員會에서도 우리나라 法曹先進化를 위해서 2,000名 내지 3,000名 線을 維持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로스쿨法案의 補完方案

國民의 生命, 財産, 安全을 擔當하고 있는 法曹人의 養成은 試驗에 의한 것이 아니고 教育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點에서 法學教育의 期間延長은 必要하다. 그러나 獨立된 法學專門大學院制度가 最善인가는 疑問이다. 美國의 로스쿨이나 日本의 로스쿨制度가 다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로스쿨制度도 다를 수 있다. 政府는 時間에 쫓겨 拙速으로 로스쿨制度를 導入할 것이 아니라 漸進적으로 로스쿨制度를 定着시키는 方向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法學專門大學院設置法의 通過

와 함께 法曹資格試驗의 試驗機關과 合格者數가 事前 調整되어야 하겠다. 이 境遇 總 定員은 2,000名 以上, 3,000名이 되어야 하며 한 學校당 300名 以下여야 한다. 設立은 準則主義에 따라 要件을 갖춘 大學에는 認可해주어야 한다. 法學專門大學院設立方針에 따라 많은 法科大學이 施設과 敎員을 늘리고 模擬法廷, 單獨圖書館 등을 짓고 있는 것은 鼓舞的이다. 이러한 施設은 非但 法學專門大學院에만 必要한 것이 아니고 法科大學에서도 必要한 것이므로 過剩投資나 浪費로 볼 必要는 없다.

2006年度에는 로스쿨 導入方針만 決定하고 2007년에는 몇 個의 先導大學에만 로스쿨 設立을 豫備認可하고 試驗해 본 뒤에 準則主義에 따라 基準에 맞는 大學을 認可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美國처럼 모든 法學部가 로스쿨로 昇格하는 方向으로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法學敎育은 法曹人 養成만이 目的이 아니고 民主·法治國家의 市民養成을 위하여도 不可缺한 것임을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敎育部는 2004년부터 시행된 醫·齒學專門大學院制度의 施行은 大學의 自律에 맡기면서 法學專門大學院만 一時에 出發시켜야 하는지 檢討해야 할 것이요, 醫·齒學專門大學院처럼 漸進的으로 導入하는 것을 檢討해 주기 바란다.

政府는 密室에서 獨斷的으로 總 定員과 司法試驗合格率을 決定할 것이 아니라 法律의 需要者인 國民의 裁判請求權과 敎育權을 伸張하는 方向으로, 國民과 敎育者, 專門家들의 보다 廣範한 意見을 收斂해 最善의 法學敎育機關을 만들어야 한다. 이 境遇 法學敎育者가 法曹敎育도 擔當하여야 하며 實務敎育이 必要하다면 司法研修院에서는 法官敎育을, 法務研修院에서는 檢事敎育을, 大韓辯護士協會에서는 辯護士敎育을 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할 것이다.

韓國 實情에서는 法學部를 廢止해서는 안 된다. 現在 法學部 敎授와 法學專攻學生, 앞으로 法學研究專攻者를 위하여 法學部 大學院法學碩士 大學院法學博士의 課程은 必要하다. 辯護士나 判·檢事가 아닌 法學敎育을 받은 사람이 많을 수록 法治主義가 確立될 수 있기 때문에 現在의 法學部를 廢止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法學敎育과 法曹專門敎育은 質的으로 다를 수 있기에 獨立的인 法學專門大學院만을 두는 것은 可能하다고 하겠다.

IV. 서울大學校의 法學教育方向

서울法大가 Law School로 갈 것인지 法科大學만을 存置할 것인지 確實하지는 않다. 그 理由는 서울大學校 自體가 確定的인 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教育人的 資源部도 現在까지 法學部를 存置할 것인지 法學專門大學院을 設置할 것인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 法學部存置案

一部教授들은 現在의 法科大學制度의 維持를 主張하고 있다. 그 理由는 法學專門大學院을 두지 않는 法科大學이 오히려 有利할 公算도 크기 때문이다. 齒·醫大의 專門大學院으로의 轉換이 遲遲不進한 것처럼 優秀한 學校가 法科大學을 廢止하면서까지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을 꼭 해야 하는가가 問題이다. 美國에서도 Law School 없는 名門大學이 있다. 예를 들면 Princeton University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最高의 法學部를 가진 名門大學이 있을 수 있고 서울法大가 400名 程度의 많은 法學科卒業生을 輩出하면 그들의 거의 全員이 다른 法學專門大學院으로 進出할 것이고 學部卒業者 中에서 400名 以上の 法曹人을 輩出할 수 있게 된다고 主張한다.

이들은 서울法大專門大學院이 設立될 境遇에는 定員 200名 中 70名 程度는 他大學 卒業生을 入學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否定的이다. 그러므로 辯護士試驗合格者의 서울法大 卒業生數는 150名 程度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 法學專門大學院의 設置意圖가 高校卒業生 中 最優秀學生을 서울法大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法學部를 없애려는 陰謀라고 보고 있다. 教育部의 意圖는 大學入學試驗의 過熱을 막기 위하여 法學部·醫學部·齒醫學部를 없애고 專門大學院化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反撥로 存置論을 펴고 있다. 또 法學教育은 技術教育이 아니고 人文教育이기 때문에 法制史, 法哲學, 比較法學, 外國法學

등을 講義하여야 하며 法學專門大學院에서는 이를 講義할 時間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反對하고 있다. 現在 있는 教授들의 所屬問題도 있어 法學部存置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또 法學博士나 法學研究者, 法學教授 養成에는 現在의 法學部 法學碩士, 法學博士 課程에 큰 長點이 있다고 主張한다.

2. 法學專門大學院設置案

이에 反하여 一部는 서울法大도 政府意圖에 따라 法學부를 廢止하고 法學專門大學院體制로 가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 主張은 가장 많은 法曹人을 養成해 왔던 서울法大가 法學專門大學院을 設置하지 않으면 法曹人養成의 傳統이 끊어지며 2流大學으로 後退하게 된다는 것이다. 法學專門大學院 設置를 위한 모든 與件이 가장 잘 갖추어졌다고 自負하면서 法學專門大學院 設置의 第1順位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法學부를 廢止하고 Law School로 轉換하더라도 法學專門碩士課程以外에 法學專門博士課程이나 一般法學博士課程을 竝設할 수 있기 때문에 法學研究者나 法學教授養成에도 問題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一部에서는 法學부의 廢止에 따라 法學教授陣의 再編成이 必要하고, 法曹經驗教授도 不足하기 때문에 教育部의 施設基準에 合致할 수 없을 것이라 하여 Law School 設立에 대해 懷疑的이다. 私立學校가 Law School 設立을 위하여 教授陣을 倍加하고 있는데 서울法大는 教授 T.O.를 받지 못하여 5年 以上の 法曹經歷者의 教授迎入이 어려운 것이 事實이다. 法大 單獨建物이나 單獨圖書館이 있기는 하나 이미 老朽하여 基準에 合致될지 걱정하고 있다. 서울法大에서는 Law School 設置를 위하여 必須的인 模擬法廷을 新築하지 아니하고 講義室을 模擬法廷으로 改造中이다.

教育部가 法大入試의 過熱이 私教育 肥大의 原因으로 보아 이를 廢止하기로 方針을 세우고 있어 그 첫 타깃이 서울法大 廢止이기 때문에 法學부의 廢止는 不可避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리하여 法學專門大學院의 入學定員을 300名으로 하며 實務教授의 充員, 法學圖書館과 模擬法廷의 新築 등으로 法學專門大學院設立을 準備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法學專門大學院의 경

우 신입생 정원은 Harvard Law School의 경우 560명, Georgetown Law School의 경우 晝夜 합 1,000명이 넘는다. 日本의 Law School도 큰 大學의 定員은 300명이다.

3. 法學부와 法學專門大學院 竝設案

法學敎育과 法曹敎育을 다 같이 잘하기 위하여 現在의 法學部를 그대로 두되 法學專門大學院制度를 導入하고 法學部大學院도 竝置하여야 한다는 案이 主張되고 있다. 이 案이 採擇되기만 하면 法學敎育의 延長으로 인한 法曹人의 養成과 質의 向上, 法學研究者의 育成이라는 目的을 달성하는데 가장 適合하다.

現在 이와 같이 法學부와 法學專門大學院을 竝置하는 것이 日本의 制度이다. 日本의 경우 韓國의 案을 벤치마킹하여 Law School 制度를 導入하였으나 韓國과 달리 Law School을 設置하는 大學의 法學部는 廢止하지 않고 있다. 法學專門大學院設立은 試驗에 의한 法曹人選拔이 아니고 敎育養成에 의한 選拔이라는 점에서 長點이 있다. 그리하여 法學部에서 法學을 專攻한 學生과 法學을 專攻하지 않은 學生을 區分하여 入學시키고 있으며 法學既履修者는 法科大學院에서 2年 修學으로도 卒業하여 新司法試驗의 應試資格을 얻고 있다. 法學을 學部에서 履修하지 않은 學生은 3年 課程을 履修해야 한다.

東京大學 法學부의 경우 法學部는 그대로 두고 法科大學院을 新說하여 運營하고 있다. 學部學生定員은 약 600名이고 法科大學院 學生定員은 300名이다. 學部 卒業生 中 200名 以上이 東京大學校 法科大學院에 入學하고 나머지 學生 大部分은 地方國立大學이나 私立大學의 法科大學院에 入學하고 있다. 그 結果 各 法科大學院은 東京大法學部卒業生 때문에 質이 向上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다.²⁸⁾

28) 日本의 Law School 制度가 失敗했다는 主張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現在 問題가 되는 것은 74個의 法科大學院이 設立되어 5,500名의 入學定員을 가지고 있는데 卒業生 司試合格者는 800名, 1,500名, 2,500名, 3,000名으로 漸增시키고 있는 것이다. 總 定員을 2,000名 내지 3,000名으로 하고 司法試驗合格者를 1,500名 내지 2,500名으로 하면 問題가 解決될 것이다.

法科大學과 法學專門大學院의 竝設에 대하여서는 政府와 法曹團體가 反對하고 있다. 그 理由는 그렇게 하는 境遇 法學部の 入試競爭의 過熱을 막으려는 設立意圖에 反하기 때문이라 한다. 또 法學專門大學院을 認可받지 못한 法學部の 反撥을 緩和할 目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政府가 試圖한 醫學專門大學院과 齒科專門大學院의 設立이 學部廢止를 強要하지 않고 있으며 大學에 따라 醫學部, 齒醫學部 등을 存置하면서 專門大學院의 設立을 認可하고 있기 때문에 法學大學院의 設立이 반드시 法學部の 廢止와 連結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經營學碩士(MBA)課程을 認可하면서도 學部經營學科의 廢科를 要求하지 않으면서 法學大學院을 設立하는 大學에만 法學部를 廢止하게 하는 것은 衡平性에도 맞지 않다.

法律專門家の 養成을 위해서는 3年의 專門大學院課程은 너무 짧다. 적어도 法曹專門家を 養成하기 위해서는 6年 程度의 教育이 必要하다. 法學부와 法學專門大學院을 竝設하는 境遇 學部에서 法學을 履修하지 않는 學生은 法學部에서 多様な 先修科目을 履修해야 할 것이다. 法學未履修者에게 socratic method로 講義하기는 어려우며 法學既履修者와 法學未履修者가 같은 演習講義를 받고 辯護士試驗에 應試하는 경우 法學未履修者의 合格率이 적어져 法學을 履修하지 않는 사람에게 門戶를 開放하려는 意圖와 逆行된다.

政府法案은 2008年에 法學專門大學院을 設立하는 것이고 學校는 그때부터 法學部學生을 選拔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法學專門大學開設以前에 入學한 學生의 教育을 위하여 法學士學位課程을 維持하게 되어 있기에 過渡的으로는 竝設形態로 된다고 하겠다.

4. 結語

만약 서울法大가 Law School로 가는 경우 政府의 方針(法案 第8條)에 따라 不得已 法學部를 廢止해야 하는 境遇에는 現在의 法學部를 代替하는 學部를 新設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過去 法科大學에 있었던 行政學科를 復活하는 方案이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 서울大學校에는 行政大學院은 있으나 學部行政學科만은 없다. 따라서 過去 法學에 中心을 둔 行政學科를 復活하여 現在의 法

科大學의 一部教授가 一部法學科目을 講義하여야 할 것이다. 이 境遇 政治學科, 外交學科와 行政學科를 두는 單科大學으로 만들 것이 必要하다. 現在의 行政大學院에 附設하는 경우 行政學 中心講義가 行하여질 可能性이 많기 때문에 폭넓은 社會科學知識을 갖춘 豫備法科大學生을 養成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생길 政治行政大學의 定員은 600名 程度는 되어야 할 것이다.

美國學部에는 法學部가 없으나 pre-law course로서는 政治學部, 歷史學部가 이를 맡고 있다. 이들 學部에서는 政治學, 政治經濟學, 憲法學, 憲政史 등을 講義하고 있고 곳에 따라서는 一部法學科目도 講義하고 있다. 法學教育의 目的이 法曹人養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法學知識을 가진 教養人과 立法·行政·高位公職者들을 養成하는 것도 目的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法大가 Law School을 運營하는 境遇에도 最高의 Law School이 되어야 할 것이며, 學生定員도 300名은 되어야 할 것이며 教授 數도 增加시키고 名實相符한 世界的인 法學專門大學院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法大에 法學專門大學院을 設置하는 것은 過去 榮光스러운 法大와 司法大學院의 傳統을 繼承하는 契機가 되어야 할 것이다.

法學專門大學院의 設立은 이제까지 放漫했던 講義爲主의 教育에서 討論·對話形式의 legal mind의 養成에 主力하여야 할 것이다. 日本의 경우 法科大學院 教授들이 講義準備에 억눌려 過勞死하는 境遇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 大學의 法學教授들도 安逸한 現狀維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法學職業教育을 開拓한다는 使命感에 透徹하여야 할 것이다.

[附錄 6]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주체) 대학의 설립·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를 정

한다.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에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관계법을 적용한다.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

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1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 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 다.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및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제16조(교원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 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등을 제외한다)이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0인으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 “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제17조(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법학전문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제10조 제3호·제26조·제36조 및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원·시설·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어학능력·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

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편입학)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하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 등”이라 한다)에 대

한 평가

2. 적절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인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3인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 중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장

나.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제32조(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 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사실조사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

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 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대학에 통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당해 대학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조치의 건의) 평가위원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제39조 내지 제4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시정명령·정원감축·학생모집 정지 및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한 때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3.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대한 건의가 포함된 평가결과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평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9조(시정명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조 제2항 및 제4항, 제7조 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0조(감축조치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2.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제41조(인가취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폐쇄명령)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

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학생의 수는 제7조, 제10조 제3호, 제26조, 제36조 및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된 시설·재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1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 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
2. 제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3.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생의 최초의 입학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